

1. 법 제25조에 따른 창업의 지원
 2.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표준 제정 지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
 3.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
 4.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 · 운영
-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

제41조(수수료)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행정사무 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·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.

제42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국토교통부장관(제4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1. 30.>

1. 법 제5조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
2. 법 제13조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
3. 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관한 사무

② 공제조합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신설 2024. 1. 30.>

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법 제1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신설 2025. 1. 14.>

제42조의2(규제의 재검토)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2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종사제한 기간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5. 1. 14.]

제4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부칙 <제35209호, 2025. 1. 14.>

이 영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